

# 보수규정

제정 2017. 5. 31. 규정 제15호

개정 2017.10. 26. 규정 제92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란 직급·호봉급과 근속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제수당”이란 이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5. “평가급”이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 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
6. “정상임금”이란 정상근무시 지급하는 보수 전액을 말한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8.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 2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 3 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4 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급은 기본급을 209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 5 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 퇴직, 휴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급과 제수당은 다음 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 6 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감봉, 복직 등의 경우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일자로 퇴직 발령된 직원은 제외하며 6개월 미만 근무직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 7 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보조비는 전액 지급한다.

제 8 조(임금피크제 등 관련 보수) ① 임금피크제의 대상은 전 직원(청원경찰 제외)으로 한다.

②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직원의 임금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2년 전(만 59세 도달 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임금피크제 및 공로연수 관련 보수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휴직자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만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3.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한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재징계 처분 없이 확정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에 미지급한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11 조(징계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봉의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 감하여 지급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3. 강등의 경우에는 3개월간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제 12 조(결근자의 보수) ①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생리휴가자의 보수) 생리휴가 사용시 통상임금을 일할계산 감하여 지급한다.

제 14 조(비상시의 지급) ①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월 임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기본급

제 15 조(기본급) ①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습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 제 4 장 제수당

제 16 조(수당의 종류) ① 공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중 기술수당과 열차승무수당, 자격면허수당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자격면허수당 중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 무선관리자, 안전관리원, 정화조기술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장 퇴 직 금

제 17 조(퇴직금의 지급) 임원 및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18 조(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다.

③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한 자가 휴직기간 중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휴직개시일로 한다.

④ 공로연수를 실시한 직원의 평균임금은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되, 공로연수중 인사규정 제27조 및 제53조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동 처분기간은 공로연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6 장 보 칙

제 19 조(전문위원 등의 보수)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20 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 22 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23 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 제16조(수당의 종류)의 제2항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 수립 전까지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서울메트로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한다.

② 제15조 별표 1의 7급 근속급은 해당 직급 근속 만 2년, 6급 근속급은 해당 직급 근속 만 3년 경과 후부터 지급한다. 다만, 종전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었던 자에 대한 7급 근속급은 종전 8급·9급 근속기간을, 6급 근속급은 종전 6급·7급 근속기간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근속기간은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른다.

제 3 조(서울교통공사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적용)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 신규 입사한 직원에 대한 제2조(정의)의 제3호 제수당, 제4호 통상임금, 제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 제15조(기본급), 제16조(수당의 종류), 제18조(평균임금)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 기준 수립 전까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17.10.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9항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적용하고,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10항 및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별표2의 8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기본급표(제15조 관련)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

(단위 : 원)

직급 호봉	직급·호봉급							근속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6급	7급
1호봉	2,750,100	2,492,900	2,288,700	2,115,100	2,014,500	1,717,200	1,550,100		
2호봉	2,787,100	2,529,900	2,325,600	2,152,100	2,051,500	1,754,400	1,587,100		
3호봉	2,826,900	2,569,700	2,365,600	2,192,000	2,091,400	1,794,500	1,627,500		95,200
4호봉	2,863,900	2,606,600	2,402,600	2,229,100	2,128,600	1,831,700	1,664,600	135,900	95,400
5호봉	2,903,600	2,646,700	2,442,700	2,268,900	2,168,500	1,871,900	1,704,800	135,800	95,300
6호봉	2,940,700	2,683,500	2,479,500	2,306,100	2,205,500	1,909,000	1,742,000	135,800	95,200
7호봉	2,980,500	2,723,400	2,519,500	2,345,900	2,245,400	1,949,100	1,782,200	135,600	95,200
8호봉	3,058,800	2,801,800	2,597,900	2,424,200	2,323,900	2,027,800	1,861,100	135,400	95,200
9호봉	3,107,700	2,850,500	2,646,700	2,473,300	2,372,800	2,076,900	1,910,200	135,400	95,300
10호봉	3,151,900	2,894,800	2,691,000	2,517,600	2,417,200	2,121,300	1,954,800	135,200	95,200
11호봉	3,193,300	2,936,200	2,732,400	2,559,000	2,458,600	2,163,000	1,996,600	135,100	95,200
12호봉	3,231,700	2,974,600	2,770,800	2,597,500	2,497,000	2,201,600	2,035,300	134,800	95,200
13호봉	3,270,100	3,013,100	2,809,300	2,635,800	2,535,500	2,240,400	2,074,000	134,800	95,400
14호봉	3,308,500	3,051,400	2,847,700	2,674,500	2,574,000	2,279,000	2,112,600	134,700	95,300
15호봉	3,345,500	3,088,500	2,884,800	2,711,300	2,611,100	2,316,200	2,149,800	134,800	95,600
16호봉	3,390,100	3,132,600	2,928,500	2,754,800	2,654,500	2,359,100	2,188,400	134,600	95,200
17호봉	3,430,000	3,172,600	2,968,500	2,794,700	2,694,400	2,399,300	2,228,800	134,900	95,300
18호봉	3,476,300	3,218,400	3,014,000	2,840,300	2,739,700	2,443,900	2,268,900	135,000	95,400
19호봉	3,516,200	3,258,400	3,054,100	2,880,100	2,779,500	2,484,000	2,309,000	134,700	95,400
20호봉	3,570,400	3,312,000	3,107,400	2,933,100	2,832,600	2,536,700	2,356,700	134,800	95,000
21호봉	3,607,300	3,349,200	3,144,300	2,970,200	2,869,500	2,573,700	2,394,100	135,000	95,200
22호봉	3,652,800	3,394,200	3,189,000	3,014,400	2,913,700	2,617,700	2,432,700	134,900	95,100
23호봉	3,692,800	3,434,100	3,228,900	3,054,500	2,953,600	2,657,600	2,472,900	134,900	95,400
24호봉	3,740,000	3,480,900	3,275,500	3,100,600	2,999,800	2,703,500	2,513,000	135,000	95,400
25호봉	3,778,600	3,519,300	3,313,900	3,139,100	3,038,300	2,742,100	2,551,700	134,900	95,400
26호봉	3,825,800	3,566,300	3,360,500	3,185,300	3,084,300	2,787,800	2,591,800	135,300	95,200
27호봉	3,874,600	3,614,700	3,408,500	3,233,000	3,131,900	2,835,000	2,633,600	135,300	95,200
28호봉	3,920,700	3,660,200	3,453,700	3,278,100	3,176,700	2,879,300	2,672,400	135,300	95,100
29호봉	3,968,400	3,707,500	3,500,600	3,324,500	3,223,100	2,925,500	2,712,600	135,300	95,100
30호봉	4,014,600	3,753,200	3,546,000	3,369,700	3,268,200	2,970,200	2,751,200	135,800	95,400
31호봉	4,062,500	3,800,800	3,593,100	3,416,500	3,314,700	3,016,300	2,791,300	135,700	95,300
32호봉	4,110,600	3,848,300	3,640,300	3,463,500	3,361,500	3,062,800	2,831,500	136,100	95,400
33호봉	4,158,800	3,896,200	3,687,900	3,510,500	3,408,300	3,109,200	2,871,600	136,200	95,400
34호봉	4,205,700	3,942,600	3,733,900	3,556,400	3,454,000	3,154,500	2,910,300	136,200	95,300
35호봉	4,249,700	3,986,100	3,776,900	3,599,200	3,496,800	3,196,900	2,946,100	136,100	95,300
36호봉	4,284,300	4,020,100	3,810,600	3,632,500	3,529,800	3,229,700	2,972,700	136,400	95,300
37호봉	4,318,600	4,054,100	3,844,200	3,665,700	3,563,100	3,262,400	2,999,200	136,600	95,400
38호봉	4,353,200	4,088,100	3,877,900	3,699,300	3,596,200	3,295,200	3,025,800	137,000	95,200
39호봉	4,387,900	4,122,400	3,911,900	3,732,700	3,629,800	3,328,200	3,052,600	136,600	95,200
40호봉	4,414,900	4,149,400	3,938,900	3,759,900	3,656,900	3,355,400	3,079,300		

(별표 2) (개정 17.10.26.)

**제수당 지급 기준(제16조 관련)**

□ 중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

직급 호봉	직급·호봉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2,790,600	2,524,100	2,318,300	2,141,400	2,044,400	1,743,200	1,547,200
2호봉	2,828,600	2,562,000	2,356,200	2,179,300	2,082,400	1,781,100	1,585,100
3호봉	2,866,700	2,600,000	2,394,300	2,217,400	2,120,400	1,819,200	1,623,200
4호봉	2,904,900	2,638,300	2,432,600	2,255,700	2,158,600	1,857,500	1,661,500
5호봉	2,946,500	2,679,700	2,474,000	2,297,200	2,200,200	1,898,900	1,702,900
6호봉	2,984,800	2,718,100	2,512,400	2,335,600	2,238,600	1,937,300	1,741,300
7호봉	3,023,100	2,756,500	2,550,700	2,373,900	2,276,900	1,975,700	1,779,600
8호봉	3,100,100	2,833,500	2,627,800	2,450,800	2,353,900	2,052,600	1,856,700
9호봉	3,139,100	2,872,400	2,666,800	2,489,900	2,392,800	2,091,700	1,895,600
10호봉	3,179,700	2,912,900	2,707,100	2,530,300	2,433,400	2,132,200	1,936,000
11호봉	3,217,300	2,950,500	2,744,900	2,568,000	2,470,900	2,169,700	1,973,700
12호봉	3,255,600	2,989,000	2,783,300	2,606,400	2,509,400	2,208,200	2,012,200
13호봉	3,293,000	3,026,500	2,820,700	2,643,800	2,546,900	2,245,700	2,049,600
14호봉	3,338,500	3,071,200	2,865,100	2,688,000	2,590,700	2,289,000	2,088,300
15호봉	3,375,100	3,107,900	2,901,800	2,724,600	2,627,400	2,325,500	2,125,100
16호봉	3,419,800	3,152,100	2,945,500	2,768,000	2,670,500	2,368,100	2,163,000
17호봉	3,457,700	3,190,000	2,983,300	2,805,800	2,708,300	2,406,000	2,200,700
18호봉	3,503,000	3,234,600	3,027,700	2,849,800	2,752,200	2,449,100	2,239,000
19호봉	3,540,700	3,272,500	3,065,600	2,887,600	2,789,900	2,487,000	2,276,600
20호봉	3,585,000	3,316,300	3,108,900	2,930,700	2,833,000	2,529,400	2,314,000
21호봉	3,623,400	3,354,600	3,147,100	2,969,000	2,871,100	2,567,600	2,351,900
22호봉	3,668,500	3,399,100	3,191,600	3,012,800	2,914,900	2,610,900	2,389,900
23호봉	3,706,100	3,437,000	3,229,100	3,050,500	2,952,500	2,648,500	2,427,100
24호봉	3,751,500	3,481,600	3,273,400	3,094,600	2,996,600	2,691,800	2,465,000
25호봉	3,797,300	3,526,700	3,318,300	3,139,000	3,040,700	2,735,600	2,502,900
26호봉	3,842,300	3,571,300	3,362,300	3,182,800	3,084,100	2,778,400	2,539,800
27호봉	3,888,800	3,617,300	3,407,800	3,227,900	3,128,800	2,822,600	2,577,800
28호봉	3,934,900	3,662,800	3,453,000	3,272,800	3,173,600	2,866,600	2,615,400
29호봉	3,981,000	3,708,500	3,498,100	3,317,600	3,218,100	2,910,400	2,652,900
30호봉	4,027,200	3,754,100	3,543,500	3,362,300	3,262,400	2,954,200	2,690,300
31호봉	4,073,300	3,799,600	3,588,500	3,407,200	3,306,900	2,997,900	2,727,300
32호봉	4,119,400	3,845,200	3,633,600	3,452,300	3,351,400	3,041,700	2,764,300
33호봉	4,165,800	3,891,200	3,678,700	3,496,900	3,396,300	3,085,600	2,801,100
34호봉	4,211,600	3,937,000	3,724,200	3,542,100	3,441,400	3,129,800	2,838,400
35호봉	4,258,000	3,983,000	3,769,700	3,587,400	3,485,900	3,174,000	2,874,800
36호봉	4,286,900	4,011,000	3,796,800	3,613,700	3,512,100	3,199,100	2,890,900
37호봉	4,312,800	4,036,000	3,821,000	3,637,200	3,534,900	3,221,300	2,906,200
38호봉	4,335,000	4,057,500	3,841,800	3,657,700	3,555,200	3,241,200	2,921,900
39호봉	4,353,200	4,074,900	3,858,800	3,674,100	3,571,400	3,257,000	2,937,500
40호봉	4,369,600	4,090,900	3,874,400	3,689,700	3,587,300	3,272,800	2,952,900

(단위 : 원)

근속급	
6급	7급
	97,000
130,400	96,900
130,400	97,000
130,500	96,900
130,400	97,000
130,600	97,000
130,400	97,000
130,300	97,100
130,500	97,000
130,500	96,900
130,400	97,000
130,500	97,100
130,600	96,900
130,900	97,000
130,800	97,000
131,200	97,000
131,200	96,900
131,400	97,000
131,500	97,000
131,700	97,000
131,600	97,100
132,000	97,000
132,100	96,900
132,600	96,900
133,100	97,100
133,200	97,000
133,800	96,900
134,100	96,900
134,500	97,000
134,800	97,100
135,100	97,100
135,400	96,900
135,600	96,900
136,000	97,000
136,200	97,100
136,600	97,000
136,700	96,900
136,500	97,000

□ 중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기술수당	○ 기술 사 : 월 80,000원 ○ 기능 장 : 월 80,000원 ○ 기사 : 월 50,000원 ○ 산업기사 : 월 40,000원 ○ 기능 사 : 월 20,000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취득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에게는 그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에게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연차휴가수당	○ 통상임금 × $\frac{1}{209}$ × 8시간 × 일수	○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3. 상여수당	○ 정 급 : 기본급의 200% ○ 평가급 : 보수월액의 지급률	○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4. 가족수당	○ 배우자 :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 20,000원 ○ 가산급 - 2011.12.31.이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 월 30,000원 - 2012.1.1.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 월 80,000원	○ 4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단,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가산급을 추가지급한다.
5. 열차승무수당	○ 기관 사 : 월 100,000원 ○ 운용기관사 : 월 80,000원 ○ 차 장 : 월 60,000원	○ 열차에 승무하는 기관사(지도요원을 포함한다) 및 차장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 ○ 야 간 : 통상임금 × 0.5 / 209 × 시간 ○ 휴 일 :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	○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무를 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장기근속수당	○ 5년~10년미만 : 월 50,000원 ○ 15년 미만 : 월 60,000원 ○ 20년 미만 : 월 80,000원 ○ 25년 미만 : 월 110,000원 ○ 25년 이상 : 월 130,000원	○ 지급대상 및 기준 가. 직원에게 지급한다. 나. 근속년수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전월 말일까지로 하되, 군경력(3년이내)을 가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투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8. 직무수당	○ 위험 - 1종 : 월 20,000원 - 2종 : 월 15,000원 - 3종 : 월 15,000원	○ 지급대상 가. 1종 기술사업소(토목, 궤도, 전기, 신호, 정보통신, 기계업무)에서 근로, 토목구조물, 고압 3,300V이상 인 전력시설 및 신호보안·정보통신 시설, 기계설비의 점검, 보수, 시공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관리소장 및 4급 이하인 직원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나. 2종 차량사업소에서 전동차기공업무, 기계공장업 무, 대차공장업무, 회전기공장업무의 점검, 보수 나 시공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관리소장 및 4 급이하인 직원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다. 3종 1종 및 2종을 제외한 현업소(역포함) 근무 또는 현업업무 수행 직원을 원칙으로 하고 세 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현업지원 - 월 10,000원	○지급대상 위험 1종, 2종, 3종을 제외한 본사 근무직원	
	○자격·면허 - 1종 : 월 30,000원 - 2종 : 월 20,000원 - 3종 : 월 15,000원 - 4종 : 월 80,000원	○해당 자격·면허 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 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9. 대우수당	○ 1종 : 월 37,000원 ○ 2종 : 월 30,000원	○지급대상 가. 1종 4급 직원중 당해 직급에서 만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나. 2종 6급 직원중 당해 직급에서 근속급 적용 후 만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 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0. 업무 지원 수당	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15.00% + 22만원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 규로 정한다.
	역무, 차량, 건축, 기계, 전자분야 교대근무자	○통상임금의 17.07% + 22만원	○역무, 차량, 건축, 기계, 전자분야 교대 근무자(3조2교대)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 은 내규로 정한다.
	토목, 궤도, 전기, 신호, 정보통신, 관제분야 교대 근무자	○통상임금의 16.39% + 22만원	○토목, 궤도, 전기, 신호, 정보통신, 관제분야 교 대근무자(3조2교대)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승무 교대근무자	○통상임금의 17.71% + 22만원	○승무분야 교대근무자(3조2교대)에게 지 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승무 교번근무자	○통상임금의 21.59% + 22만원	○승무분야 교번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 항은 내규로 정한다.
	4급이하 2000년 이후 입사자	○ 7급1호봉 기본급의 4%	○대상자에게 분야별, 근무형태별 업무지원 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 규로 정한다.
11. 조정수당	○통상임금의 3%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 규로 정한다.	

□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

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상여수당	· 정 급 : 기본급의 200% · 평가급 : 보수월액(연봉월액)의 지급률	·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 한다.	
2. 장기근속수당	· 5호봉 ~ 9호봉 : 월 50,000원 · 10호봉~14호봉 : 월 60,000원 · 15호봉~19호봉 : 월 80,000원 · 20호봉~24호봉 : 월 110,000원 · 25호봉 이상 : 월 130,000원	· 직원에게 지급한다. · 근속년수의 계산은 호봉연수에 의한다.	
3. 초과 근무 수당	연 장	· 통상임금× 1.5/209×시간	· 취업규칙 또는 사장의 명을 받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 06:00)에 근무한 직원에게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야 간	· 통상임금× 0.5/209×시간	
	휴 일	· 통상임금× 1.5/209×시간	
4. 연차휴가수당	· 통상임금× 1.0/209×8시간 × 미사용 일수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5. 가족수당	· 배 우 자 : 40,000원 · 부양가족1인당 : 20,000원 · 가 산 금 : 80,000원 (셋째 이후의 자녀부터 적용, 다만, 2011.12.31이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는 30,000원)	· 부양가족 4인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 기술수당	· 기 술 사 : 월 80,000원 · 기 능 장 : 월 80,000원 · 기 사 : 월 50,000원 · 산 업 기 사 : 월 40,000원 · 기 능 사 : 월 20,000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공무원평정규칙에서 정한 해당항목 소지자에게 지 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에게는 그중 활용 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며 세 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자격면허수당	· 1종 : 월 30,000원 · 2종 : 월 20,000원 · 3종 : 월 15,000원 · 4종 : 월 80,000원	· 해당 자격·면허 취득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8. 보전수당	통 상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1% + 22만원	· 통상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변형 통상근무자	통상임금의 20.7% + 22만원	· 변형통상근무자에 지급한다.
	3 조 2 교 대	통상임금의 19.1% + 22만원	· 3조2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
	4조2교대자(시범)	통상임금의 19.1% + 22만원	· 4조2교대(시범)근무자에게 지급한다.
	교 번 근 무 자	통상임금의 19.1% + 22만원	· 승무 P/L을 포함한다.
	2014.1.1.이후 입사자	7급1호봉 기본급의 4%	· 대상자에게 근무형태별 보전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9.대우수당	· 4급~5급 : 월 30,000원		· 4급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5급은 승진소요년수 8년 경과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0.직급보조비	· 6급~7급 : 월 30,000원		· 해당 직급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근속급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7급 직원에게는 월4만원으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1. 조정수당	월 30,000원		· 차량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별표 3]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제2조의 제4호 및 제18조 관련)

종전 서울메트로 직원에게 적용

구 분	포 함 범 위
통상임금	기본급과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평가급은 기본급×개인별지급률)의 12분의3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한다.

종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에게 적용

구 분	포 함 범 위
통상임금	기본급,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평가급은 기본급×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공로연수를 실시한 직원의 평균임금은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